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4
------------	-----

제출년월일 : 2004. 6. 8.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의료급여법 전문개정으로 인해 변경·사용되는 용어 및 법조항의 정비와 2004. 7. 1.부터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 운영하게 됨에 따라 직제개편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관직을 변경·지정함으로서 의료급여기금 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법개정으로 인한 용어정비

- 1) 조례명 : 의료보호기금 > 의료급여기금
- 2) 용어정비 : 의료보호 > 의료급여, 보호대상자 > 수급권자

나. 공무원 회계관직명 정비(안 제4조제1항)

- 1) 사회복지과장 > 복지지원과장
- 2) 노사협력담당 > 자활의료지원팀장

3. 관계법령

가. 의료급여법 제22조, 제23조, 제25조

나.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제25조”로 하고,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제3조중 “의료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를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하며, “노사협력담당”을 “자활의료지원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며, “보호비용”을 “급여비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명칭변경은 2004. 7. 1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제1호서식]

원 부

제 호		년도	
성명			
주소			
의료급여기금	소관		
상환금	대불액	상환액	미납액
내 용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①

납 입 통 지 서

제 호		년도	
성명			
주소			
의료급여기금	소관		
상환금	대불액	상환액	미납액
내 용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①

영 수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성명			
주소			
의료급여기금	소관		
상환금	대불액	상환액	미납액
내 용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①

사하구청장 귀하

영 수 증

제 호		년도	
성명			
주소			
의료급여기금	소관		
상환금	대불액	상환액	미납액
내 용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	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①

사하구분임수입원 ①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독 촉 장

제 호		년도	
성명			
주소			
의료급여기금	소관		
상환금 내 용	대불액 (부당이득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 기분			
납 입 금 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인)

납 입 통 지 서

제 호		년도	
성명			
주소			
의료급여기금	소관		
상환금 내 용	대불액 (부당이득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 기분			
납 입 금 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하구청장 (인)

영 수 펼 통 지 서

제 호		년도	
성명			
주소			
의료급여기금	소관		
상환금 내 용	대불액 (부당이득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 기분			
납 입 금 액	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사하구청장 귀하

영 수 증

제 호		년도	
성명			
주소			
의료급여기금	소관		
상환금 내 용	대불액 (부당이득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 기분			
납 입 금 액	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사하구분임수입원 (인)

알 릴

1.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청지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의신청 및 문의
 사하구청 복지사업과
 (전화 : 207-6041,
 220-5561)